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087 호】

2014년 07월 01일 (화)

선람	기관의 장

회람							

차 례

조 례

고양시조례 제1593호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27호 —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187호 — 도로명주소 고시 — 13

고양시 고시 제2014-188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 16

고양시 고시 제2014-189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9

고양시 고시 제2014-190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고양시 고시 제2014-191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4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3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4-974호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명지병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25

고양시공고 제2014-977호 —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 26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4년 7월 1일

고양시조례 제1593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2. 환경경제위원회 8명 이내
3. 건설교통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5.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위원회 8명 2. 환경경제위원회 7명 3. 건설교통위원회 7명 4. 문화복지위원회 7명 5. 의회운영위원회 8명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2. 환경경제위원회 8명 이내 3. 건설교통위원회 8명 이내 4. 문화복지위원회 8명 이내 5.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원[30명→31명(지역구 27, 비례 4)]된 의원정수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정수 “8명”을 “8명 이내”로 함.(제2조제1호)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정수 “7명”을 “8명 이내”로 함.(제2조제2호)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정수 “7명”을 “8명 이내”로 함.(제2조제3호)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정수 “7명”을 “8명 이내”로 함.(제2조제4호)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 “8명”을 “8명 이내”로 함.(제2조제5호)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 - 27 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아동학대 및 각종 폭력으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하고,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심의내용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7월 2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3354 (FAX 031-8075-49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고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고양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아동청소년과 강 득 모
	팀 장 직위·성명	아동보호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직위·성명	이 미 란 8075-3357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고양시 고시 제2014 - 18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1.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7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3-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7	20009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의미	2011.7.29. 일 제고시 누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10	20100715	자유로와 더불어 고양시를 지나는 제2의 도시고속화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80-37	20110715	서정마을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77-16, 37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16번길 47-8	20100126	서오릉로 시점에서 716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57-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35	2012060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2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45-12	20100126	북한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11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7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240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8-1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116번길 39-70	20100126	고골길 시점에서 116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41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밭로 101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6-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5번길 4	20100126	일산로 시점에서 135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85-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21번길 120	20100126	은행마을로 시점에서 210m에 위치한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4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11번길 6-25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3-27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6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2로 41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49-3, 1051-9, 10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770번길 270	20121005	고봉로 시점에서 7700m에 위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10	20100126	견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18-27	20110715	덕이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66-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765-2	20120402	고양시 중앙을 지나는 가장 큰 도로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0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35번길 16-8	20100126	일산로 시점에서 6350m에 위치한 도로	나온체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24-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웅비로 12번길 6-15	20100126	웅비로 시점에서 120m에 위치한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76-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97	20100126	천연기념물 송포백송을 도로명에 적용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8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29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88-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54-41	20081010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560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7-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멱절길 195-24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768-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3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7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67번길 116	20100126	구산로 시점에서 67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고시 제2014 - 188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 월 1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54-43 외 2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88-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88-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54-43	2014.7.1.	덕이동 888-1번지 토지분할로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165-4, 165-5, 16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6	2014.7.1.	건물분할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165-4, 165-5, 16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12	2014.7.1.	건물분할

고양시 고시 제2014 - 189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45-14 외 7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387번길 45-14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지축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5번길 4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백석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716번길 47-8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원흥동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97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덕이동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밭로 101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성석동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51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2.4.24.	풍동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7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대장동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9	2014.7.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대장동	

고양시 고시 제 2014-19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도내동 58-2(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78-0블럭) 일원에 건축주 조성문외 1인이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신청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8호)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결정	노외주차장 8호	887.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2번지 일원	
시행	노외주차장 8호	887.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2번지 일원	

- 건축개요

구분	주차장	비고
대지면적(㎡)	887.0	
건축면적(㎡)	693.33	
공작물면적(㎡)	-	
연면적(㎡)	2079.99	
건폐율(%)	78.17	
용적율(%)	234.50.	
규모	지상3층	

- 건물개요

구분	바닥면적				비고
	근생시설	보행통로	주차장	합계	
지상1층	480.13	58.80	154.40	693.33	
2층			693.33	693.33	
3층			693.33	693.33	
옥탑			68.27	68.27	
합계	480.13	58.80	1,609.33	2,079.9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6(성문종합건설)
- 성명 : 조성문 외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78-0블럭	887	8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887						

고양시 고시 제 2014-19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4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덕양구 도내동 435번지(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4블럭) 일원에 (유)코넷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8호)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신청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3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4호)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 고
결정	노외주차장 4호	1695.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35번지 일원	
시행	노외주차장 4호	1695.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435번지 일원	

- 건축개요

구분	주차장	비고
대지면적(㎡)	1,695.0	
건축면적(㎡)	1494.30	
공작물면적(㎡)	-	
연면적(㎡)	6,464.42	
건폐율(%)	88.16	
용적율(%)	381.38	
규모	지상5층	

- 건물개요

구분	용도	면적	비고
지상1층	근생시설/주차장	1,467.51	
2층	근생시설/주차장	1,494.30	
3층	주차장	1,494.30	
4층	주차장	1,494.30	
5층	주차장	1,494.30	
합계		6,464.4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3로20(신원동) 801-1801
- 성명 : (유)코넷 대표 이귀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12. 13. ~ 2014. 11.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4로트	1,695	1,6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1,695						

고양시 공고 제2014-974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명지병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축법』 11조 규정에 따른 의제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명지병원)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4. 7. 1.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4-2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명 칭 : 명지병원

다. 사업의 면적 및 또는 규모

-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결정	종합의료시설	20,030.8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번지 일원	
시행	종합의료시설	20,030.8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번지 일원	

- 건축개요

구분	규모	비고
대지면적(㎡)	20,030.80	
건축면적(㎡)	11,426.74	
연면적(㎡)	71,751.41	
건폐율(%)	57.05	
용적율(%)	192.97	
규모	지하3층/ 지상9층	건물 증축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97-24
- 성명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6. 30.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공고 제 2014- 977 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소하천(섬말천)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01일

고양시장 (직인)

구분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당초	섬말천(소경원천)	섬말천(소경원천)정비공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060-3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70	1,390	1,255		2005.03.	2007.12.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	용지 조서
변경	**섬말천(소경원천)**	**섬말천(소경원천)정비공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80-2**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7-6**	455	104		**2014.07.**	**2015.12.**	**재해예방 및 하천 환경개선**	**용지 조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업 계 획 서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말천(소경원천)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본 과업은 섬말천(소경원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정비와 홍수 시 예상되는 호안의 붕괴 및 주변 제방의각종 시설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섬말천을 친환경적인 소하천으로 변화시켜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울러 질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변경사유

섬말천(소경원천) 사업계획 구간 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JCT 설치로 소하천 유로가 변경되어 고속도로 구간 내 편입되는 소하천(소경원천, 효릉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시에서『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소하천 정비 추진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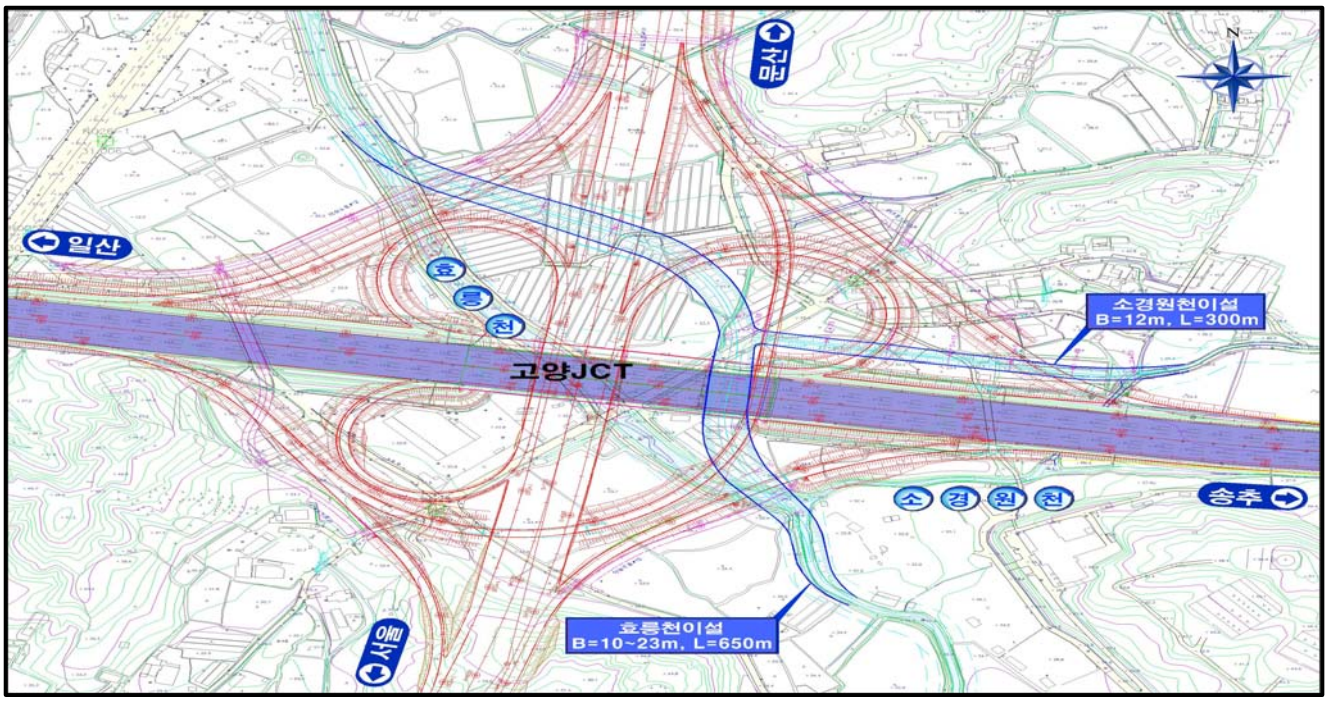

〈 소하천 유로변경 〉

다. 하천공사의 개요

사업개요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42m	**455m**	
폭 원	10~12m	**10~12m**	
- 호 안 공	좌안 : 819m 우완 : 571m	**좌안 : 437m** **우완 : 126m**	
- 구조물공	교 량 : 3개소 낙차공 : 2개소	**교량 : 1개소** **낙차공 : 2개소**	
- 도 로 공	포 장 : 1,379m	**포 장 : 553m**	
- 부 대 공	1식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당 초 : 시점 - 원당동 207번지 ○ **변 경 : 시점 - 원당동 280-2번지**
종점 - 원당동 1060-3번지 **종점 - 원당동 197-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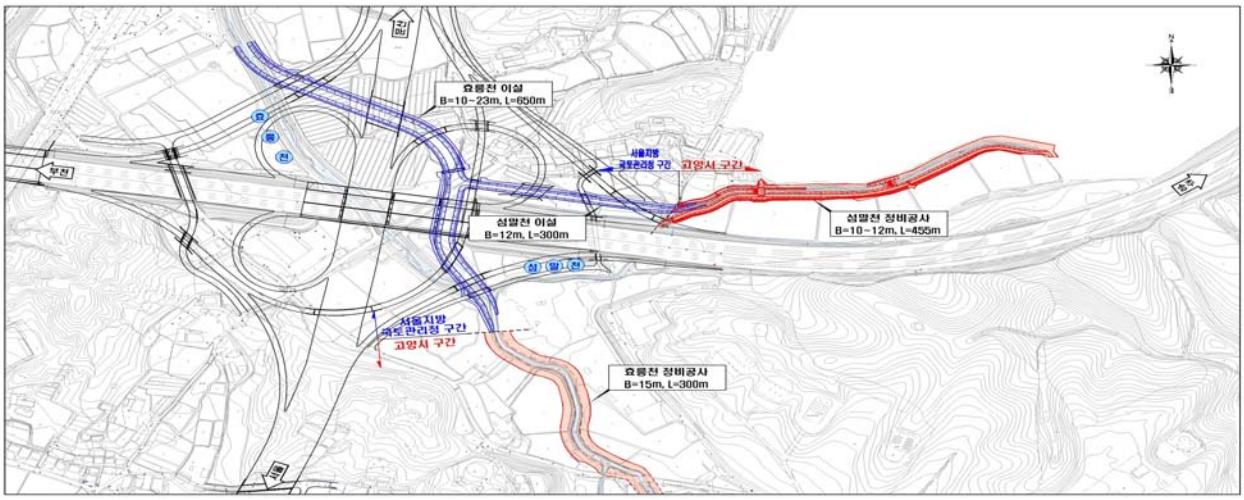

4. 하천공사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번지 (☏031-8075-5250)

○ 명 칭 : 고양시 덕양구청장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 초 : 2005. 3. ~ 2007. 12.

○ 변 경 : 2014. 7. ~ 2015.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당초 : 21.535㎡ / 54필지

○ 변경 : 7,226㎡ / 15필지

7. 준공된 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환경녹지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3년	2014년	향후	비고
계	2,100	60		1,500		
1. 실 시설 계	60	60				
2. 토지매입비				700		
3. 시 설 비				800		

12.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2014.06.25. ~ 2014.07.10.

○ 열람장소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4. 07 ~

○ 보상절차 및 방법: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출평균치

※ 추후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개별통보 예정

13. 기타사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031-8075-525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